

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-0005호

우편업무규정 제326조 제3항 및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에 관한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-35호)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

- 1. 공고(변경) 사유: 우정사업본부「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」고시 일부개정
- 2. 대상관서 내역

구 분	총괄국		집배센터	
	4급국	5급국	5급국	6급국
서울지방 우정청	서울중앙, 광화문, 서대문, 동대문, 서울광진, 서울마포, 서울관악, 서울은평, 서울영등포, 서울강남, 서울성북, 서울강동, 서울송파, 서울양천, 서울강서, 서울동작, 서울서초, 서울용산, 서울노원, 서울중랑, 서울도봉, 서울구로	-	-	-
계	22국			

부 칙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026년 1월 15일

서울지방우정청장